



이주 아동의 교육 접근성 보호

가족과 교육자를 위한 자료

미국에서는 이주 농업 종사자, 이주 어부, 계절적 산업 또는 직종 종사자 등 이동이 잦은 가족의 일원인 일부 아동을 포함하여 이동이 잦거나, 이동이 잦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 아동이 다수 있습니다.¹ 이러한 이주 아동은 한 거주지와 교육구에서 다른 거주지와 교육구로 정기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동성이 교육 기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이민 자격이 없는 일부 이주 아동 또는 영어 학습자(EL) 학생은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데 추가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현황 자료는 이주 아동이 직면한 교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성을 강조하고,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며, 공립학교가 연방 민권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²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유치원-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민 자격에 관계 없이 **반드시**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수용해야 합니다.³ 또한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은 공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⁴
2. 공립학교는 이주 아동을 포함하여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유치원-12학년 학생에게 **반드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영어 학습자로 정하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3. 공립학교는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등록, 수업, 기타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정확한 번역 문서나 구두 통역을 제공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에 등록을 막고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 아동은 다음의 경우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계절에 따라 이주하거나, 연중 수차례 이사하는 이주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등록하는 것을 학교가 금지할 경우.
- 학교가 신입 학생들에게 학교 입학의 조건으로서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미국의 출생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경우.
- 교육구의 지리적 경계 안에 위치하는 임시 노동자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이 학교의 거주 증명 정책에 따라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 학생들은 특별 학업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예: 영재 교육)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영어 학습자라는 이유로 또는 직업 관련 이동으로 인해 정규 학교 과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이나 기타 학년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주 학생은 다음의 경우 등록 후에도 의미 있는 참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영어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학교가 중간에 들어오는 이주 학생에게는 그러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부모,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주 아동을 과거 등록 및 과정 이수 기록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학교가 일률적으로 보충 수업(예: 보충 수학)에 배치하는 경우.
-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 가족은 출신 국가 때문에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고 학교 교직원이 잘못 가정하는 경우.
- 언어 지원 서비스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이주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한 가지 교육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



이주 아동이 공립학교 등록 또는 참여에서 출신 국가, 이민 자격 또는 영어 학습자 자격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의 경우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민권부(Civil Rights Division) 또는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민권 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구가 출신 국가나 이민 자격을 이유로 이주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거나 학습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 교육구가 영어 학습자인 이주 아동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학교에 연락했지만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불만 사항(다국어 제공)을 CRT에 civilrights.justice.gov 로 접수하거나, OCR에 ocrcas.ed.gov 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언어 지원 서비스 문의는 1-800-USA-LEARN (1-800-872-5327) (TTY: 1-800-877-8339) 또는 이메일 Ed.Language.Assistance@ed.gov).

기타 정보는 다음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학교 안내문\(Dear Colleague Letter\): 학교 등록 절차 \(2014년 5월\)](#)
- [현황 자료: 모든 아동의 학교 등록 권리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the Rights of All Children to Enroll in School\) \(2014년 5월\)](#)
- [학교 안내문\(Dear Colleague Letter\): 학생 및 제한적 영어 구사 학부모\(English Learner Students and Limited English Proficient Parents\) \(2015년 1월\)](#)
- [현황 자료: 영어 학습자가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고 평등하게 참여하기\(Ensuring English Learners Can Participate Meaningfully and Equally in Educational Programs\) \(2015년 1월\)](#)
- [현황 자료: 출신 국가 및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에 대한 대처\(Confronting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 Origin and Immigration Status\) \(2021년 8월\)](#)
- [현황 자료: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교육 접근성 보호\(Protecting Access to Education for Unaccompanied Children\) \(2023년 6월\)](#)

1 이 현황 자료에서는 이동이 잦거나 이동이 잦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 아동을 포함하기 위해 '이주 아동'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20 U.S.C. § 6399(3)에 있는 "이주 아동"의 정의(미국 교육부의 이민자 교육 담당실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이주 아동"을 정의)을 따르지 않습니다.

2 예를 들어, 미국 교육부 및 법무부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을 집행합니다. 42 U.S.C. § 2000d. 1964년 민권법 타이틀 IV에 따라 법무부는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 보호 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42 U.S.C. § 2000c-6. 또한 법무부는 1974년 평등 교육 기회법(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t)을 시행하여 주 교육 기관과 교육구가 영어 학습자 학생이 주 및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 U.S.C. §§ 1701-1758.

³ *Plyler v. Doe*, 457 U.S. 202 (1982) 참조.

⁴ *상기 각주 2* 참고. 또한 *Lau v. Nichols*, 414 U.S. 563, 568 (1974) 참고.